

■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제개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좌욕기 또는 물요법장치관련 문의

☞ 제품사양 : 정격 220V 60Hz 1,600W

당사는 좌욕기 또는 물요법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본 제품에 수도 배관을 연결하고 내부에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욕조(양변기에 설치)에 받아 기포발생기로 공기방울을 발생하여 사용합니다.

사용용도는 병원 입원 환자, 출산 후 목욕할 수 없을 때, 부인병 치료 및 항문주위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기제품은 제품은 2004년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기) 품목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의료기기(물요법장치) 품목허가도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 따르면 2007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방안이 발표되면서 좌욕기(물요법장치)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만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도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기) 품목으로 받은 안전인증을 반납하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만으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요?

Answer 문의하신 화장실용 전기기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에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리모트컨트롤스위치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문의

당사에서 개발한 리모트컨트롤스위치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제품은 등기구 안에 설치가 되며 리모컨으로 전등을 ON/OFF 해주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AC220V입력에 AC 220V출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내부에는 프로그램으로 리모컨 신호를 처리해주는 RF 무선수신부가 있고, 리모컨으로 ON을 시키면 출력은 AC220V ON, OFF시키면 출력은 AC220V OFF가 됩니다. 또한, 리모컨은 방송통신법에 의해 전파승인을 받았습니다.

Answer 문의하신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는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어 안전인증 대상품목임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CAM Switch 전기용품안전인증 문의

업소용 Coffee Machine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 및 시험중입니다. 이 제품에 부착 된 CAM Switch의 정격이 600V, 40A입니다. 이 Switch는 CE인증은 되어 있으나 KS/KC 인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시험을 요청 하였으나, 450V이하의 정격의 Switch에 대해서는 시험이 요구되지만, 450V 이상의 정격의 Switch에 대해서는 적용할 시험규격이 정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업소용 Coffee Machine의 전기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부착 된 600V, 40A 정격의 CAM Switch를 시험을 해야 하는지 또는 안해도 되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에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의 정격전압을 440V 이하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제품의 정격전압이 600V로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